

#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

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8. 2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## I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

- 채용직종 : 기간제근로자(한시 계약직)
- 채용분야 및 자격 요건 등 < ※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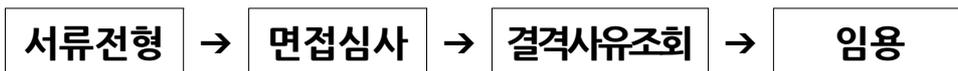
채용분야	담당업무	인원	자격요건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지역맥주 연구개발	맥주 레시피 개발 및 맥아 품질특성 평가 등	2명	· 자연계열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· 맥주분야 제조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자
회계	회계관리 및 정산업무	1명	· 경상계열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· 회계분야 경력 1년 이상자

- 채용기간 : 채용일 ~ 2017. 7. 31 (연구기간 : 2015. 8. 1 ~ 2018. 7. 31)  
※ 단, 연도별 사업 평가 통과 시 1년 단위로 연구기간 내 연장 가능하나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
- 보수수준 : 1,800천원/월 (식비, 각종수당 등 부가급여 전액 포함)  
※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준 산정

## II. 공고기간 및 원서접수

- 공고기간 : 2016. 8. 2 ~ 8. 12 18:00까지
- 접수기간 : 2016. 8. 2 ~ 8. 12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([www.jpdc.co.kr](http://www.jpdc.co.kr)) 접수

## III. 전형절차



## ○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- 서류전형 : 적·부 판정
- 면접전형 :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

## VI. 제출서류

-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
- 제출서류 (⑤, ⑥, ⑦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)
  - ① 이력서 / 자기소개서
  -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
  -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
  - ④ 주민등록 초본 (병역사항 기재분, 해당자에 한함)
  - ⑤ 경력증명서 /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(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)
    - ※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국민연금(또는 건강보험)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(건강보험) 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
(단, 공사 전력 조회 결과 경력기간 등 입증 가능 시 경력 인정 가능)
  - ⑥ 자격증 사본 / 어학 성적표
    - 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, 어학 성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획득한 점수에 한함
  -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/ 장애인 등록증 사본
    - 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(지방보훈지청) 발급분에 한함 (공고일 이전 발행분의 경우 가점 미부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제출서류 원본은 면접 심사 당일 제출
  - ※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후 기재사항 및 자격증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되며, 공사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 모든 분야 응시제한

## V. 기타 유의사항

- 임용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

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-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근무지 변경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“채용문의”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(☎064-780-3800)로 문의

## VI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8. 2 ~ 8. 12	온라인
면접심사	8. 23 (예정)	
합격 예정자 발표	8. 24 (예정)	
결격사유 조회	8. 24 ~ 8. 31 (예정)	신원조회 및 신체검사
임용	9월 중 (예정)	

### 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